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

제 3 7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5가합51491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원 고	1.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	2.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	3.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	4.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
피 고	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
변 론 종 결	2015. 5. 12.
판 결 선 고	2015. 6. 11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[redacted] 주식회사(이하, [redacted]신탁)가 2015. 1. 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31호로 공탁한 259,176,460원 중 149,745,679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[redacted]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, 46,075,095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, 23,040,787원은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[redacted]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, 40,314,899원은 원고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에게 각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[redacted](이하, 소외 회사)는 [redacted]구 [redacted]동 [redacted]지구사업장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(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에서 상호변경됨),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(주식회사 [redacted]저축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에서 순차로 상호변경됨),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(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에서 상호변경됨),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(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을 거쳐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에서 상호변경됨)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9. 6. 26.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, 이 사건 각 부동산)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회사, 수탁자를 아시아신탁,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은행들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, 이 사건 신탁계약).

> **제1조【신탁목적】**
>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(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·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·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제15조 【비용의 부담】
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,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.
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우선수익자로 처음 지정된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의한 지체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, 수취할 수 있다.

제22조 【처분대금의 정산방법】
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1.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,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(신탁보수 및 대리사무보수)
2.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
6. 우선수익자의 제권
7.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

나.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은행들과의 여신거래약정에 위반하여 신탁부동산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아시아신탁은 2014. 10. 22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합계 259,176,460원의 재산세(토지) 부과처분을 한 바 있었는데(이하, 이 사건 재산세), 이에 따라 피고는 아시아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위 재산세 259,176,460원을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요구하였다. 이에 아시아신탁은 2015. 1. 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131호로 259,176,46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들을 원고들과 피고로 정하여 변제공탁하였다(이하, 이 사건 공탁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들은,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에서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앞서 먼저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2호의 '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'는 신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것을 주장할 수 없고,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들이라고 주장하면서,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'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'는 신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우선하여 지급받아야 하고,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피고라고 다툰다.

3. 판단

신탁이 종료될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신탁행위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은 같은 항 제2호의 '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'를 같은 항 제6호의 '우선수익자의 채권'보다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이 사건 재산세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(2014. 1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7조 제1항은 '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'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,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'위탁자'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과 상관없이 소외 회사가 되므로,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는 신탁자 앞으로 부과될 뿐, 수탁자 앞으로 부과될 여지가 없는 점,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는바,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시아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우선수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'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'를 수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, 그에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아시아신탁은 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재산세 상당액을 우선수익자들인 원고들에 앞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,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재판장 판사 고연금

판사 진재경

판사 노연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03

목록

1.	[redacted]	광역시	구	동	공장용지	4,200㎡
2.		광역시	구	동	임야	1,424㎡
3.		광역시	구	동	임야	2,436㎡
4.		광역시	구	동	임야	1,608㎡
5.		광역시	구	동	임야	4,282㎡
6.		광역시	구	동	임야	286㎡
7.		광역시	구	동	공장용지	2,508㎡
8.		광역시	구	동	대	151㎡
9.		광역시	구	동	대	176㎡
10.		광역시	구	동	대	664㎡
11.		광역시	구	동	답	61㎡
12.		광역시	구	동	공장용지	3,134㎡
13.		광역시	구	동	공장용지	172㎡
14.		광역시	구	동	대	509㎡
15.		광역시	구	동	공장	3,534㎡
16.		광역시	구	동	임야	857㎡
17.		광역시	구	동	대	153㎡
18.		광역시	구	동	대	153㎡
19.		광역시	구	동	전	23㎡
20.		광역시	구	동	대	463㎡
21.		광역시	구	동	전	775㎡
22.		광역시	구	동	대	535㎡
23.		광역시	구	동	임야	855㎡
24.		광역시	구	동	공장용지	3,168㎡